

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3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3월 31일

3. 제안이유

가. 국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간 지급 기준액의 형평성 유지

나. 각종시험 시행 관련수당을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  
편성지침을 근거로 현실화

4. 주요골자

가. 시험감시수당 조정(별표)

○ 공휴일 : 20,000원을 30,000원으로

○ 평 일 : 10,000원을 15,000원으로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
이는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 감시수당과 동일한 기준으로  
지방자치단체의 시험 감시수당을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 
개정은 타당함.